

배포 2024. 4. 29.(월) 15:30

보도시점

(인터넷) 2024. 4. 30.(화) 06:00

(지면) 2024. 4. 30.(화) 석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 실시

-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시작되는 교육혁명의 전국 확산 기대
- 5월 1일(수)부터 6월 30일(일)까지 공모 접수, 7월 말 결과 발표 예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5월 1일(수)부터 6월 30일(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진행된 시범지역 1차 공모를 통해 총 31건(1유형 20건, 2유형 6건, 3유형 5건)의 특구를 시범지역으로 지정(2024.2.28.)하였으며, 교육발전특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지역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 지정을 진행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신청 기간은 5월 1일(수)부터 6월 30일(일)까지이며, 특구의 지정을 원하는 지역은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체결한 ‘교육발전특구 협약’과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된다. 1차 시범지역 지정평가에서 예비지정을 받은 지역도 1차 평가 시 제기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 신청하면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 예비지정 지역: 경기 연천, 경기 파주, 경기 포천, 충북 보은, 충남 논산, 충남 부여, 경북 울릉, 경남 거창, 전남 해남 등 9곳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최종 선정 결과는 2024년 7월 말에 발표되며, 지정된 지역은 재정 지원과 함께 특구 운영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받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지역에서는 특구별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로 보다 많은 지역이 지역 맞춤형 교육혁명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개요

담당 부서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	책임자	과 장	최수진 (044-203-6340)
		담당자	사무관	김영현 (044-203-6354)
			사무관	최경은 (044-203-6359)

□ 지정 개요

○ (신청 단위)

유형	신청 단위	신청 주체
1유형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장-교육감
2유형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장-교육감
3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하여 공동 참여 가능

※ 3유형의 경우, 특별자치도가 지정하는 '행정시'도 신청 단위로 지정 가능

○ (지정 지역) 수도권이 아닌 지역

※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선정 가능

○ (지정규모)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단계적으로 결정

○ (운영 기간) 3년

- 시범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 결정

□ 신청 방법 및 심사 기준

○ (신청 방법)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체결한 '교육발전특구 협약'과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범지역 공모 신청기한 내 제출

※ 신청 전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기초)지자체, 교육청, 이전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이 함께 지역협력체 구성 필수

○ (심사 기준) △지정의 합목적성(20) △사업계획의 우수성(40) △연계·협업의 적절성(20) △재정 계획의 적정성(10) △성과관리의 체계성(10)

□ 지정 절차

시범지역 지정계획 수립 및 공고	□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과 시범지역 지정기준 및 추진일정 등을 수립하여 공고	교육부
지정 신청	□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특구 지정을 신청 ▶ 지역협력체 구성·운영 ※ 기초지자체 단위 지정 시 해당 교육지원청도 참여 ▶ 교육발전특구 협약 체결 ▶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작성 ▶ 지역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 지자체장과 교육감 공동으로 지정 신청	지자체와 교육청
지정 심사	□ 서면심사가 원칙, 필요 시 대면 및 현장심사 가능	교육발전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 특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지방시대위원회
시범지역 지정	□ 교육부 장관의 시범지역 지정	교육부
시범지역 운영 (3년)	□ 시범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세부 추진계획 수립·추진 ▶ 교육부와 시범지역 간 협의 및 사업 컨설팅을 통해 사업운영 계획 구체화 ▶ 효과적 특구 운영을 위한 시범지역별 특례 발굴 및 규제 개선 제안	시범지역 지자체와 교육청 교육부